

헌정제도연구사업

Issue Paper 2018-03-04

Ⅲ. 사회적 가치
강화를 위한 법적
쟁점과 전망

■
헌법상 국가의 어업육성 및
보호의무 실현을 위한
법적 쟁점과 전망

— 수산식품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

배 건 이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헌법상 국가의 어업육성 및
보호의무 실현을 위한
법적 쟁점과 전망
- 수산식품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

배 건 이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ISSUE PAPER 2018-03-04

헌법상 국가의 어업육성 및
보호의무 실현을 위한
법적 쟁점과 전망

- 수산식품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

I. 들어가며	07
II. 헌법상 국가의 어업육성 및 보호의무 및 입법적 구체성	08
1. 헌법상 국가의 어업육성 및 보호의무의 개념 및 의의	08
2. 헌법상 국가의 어업육성 및 보호의무의 연혁 및 법적 성격	09
3. 헌법상 국가의 어업육성 및 보호의무 관련 주요내용 및 국가별 비교	11
4. 헌법상 국가의 어업육성 및 보호의무 관련 입법체계	18
III. 수산식품산업 분야의 현황 및 입법체계	23
1. 수산식품산업 의의 및 현황	23
2. 수산식품산업 분야 관련 법률 및 지원체계	26
IV. 수산식품산업발전을 위한 법적 쟁점 및 방향	29
1. 수산식품산업의 범위 관련 사항	29
2. 수산식품산업 관련 국가계획의 수립 관련 사항	33
3.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36
V. 결론	39

I. 들어가며

- 2017년부터 2018년 상반기 동안 헌법개정을 위한 많은 쟁점들이 중요 이슈로 부각되었지만, 해양 및 어업분야의 헌법개정 논의는 해양주권의 표기¹⁾ 또는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반영 등과 관련된 사안 등을 제외하고는 구체적 이슈화 된 쟁점이 없는 실정임.²⁾
- 헌법개정안에 직접 명시적인 조문을 넣는 것이 최상위법상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선언적 헌법규정으로 인해 헌법조항의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차원에서 헌법적 가치와 목표를 구체화 해 국민의 이익보호 차원에서 실효성을 강구하는 것 역시 중요한 문제일 것임.
- 현재까지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어업 또는 수산업 등의 발전을 위한 진흥법 또는 지원법 제개정을 위한 연구 등으로 법률차원의 입법체계만을 논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³⁾ 이 분야의 사회적 가치 강화를 위해서는 헌법규범의 구체화 차원에서 법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여 법적 쟁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는 헌법 제123조 어업육성 및 보호의무의 입법적 구체화 여부를 확인하고 수산식품 산업 분야와 관련해 제도적 보완을 위해 관련 법적 쟁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1) 이개호 의원실, 해양수산 분야 헌법개정 토론회, 2017.11.14

2) 홍문표 외 6인 의원실,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반영을 위한 헌법개정방향, 2018.01.24

3) 주문배 외 6인, 수산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실천방안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2010/임경희, 한국수산식품 세계화 전략(수산물 수출을 중심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7 / 장흥석 외 3인,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3

II. 헌법상 국가의 어업육성 및 보호의무 및 입법적 구체성

1. 헌법상 국가의 어업육성 및 보호의무의 개념 및 의의

- 대한민국 헌법 경제에 관한 장인 제9장 제123조에서는 “①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헌법 제123조는 현대산업사회에 열악한 지위에 있는 농업·어업·중소기업의 보호 및 육성과 산업에 종사하는 농민·어민·중소기업인을 보호하고, 또한 지역 간 경제의 불균형으로 야기되는 경제적 불균형의 시정을 위한 국가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⁴⁾
 - 일정 지역이나 직역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나 보호는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여 평등원칙이나 평등권침해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으나, 헌법 제123조는 헌법정책적 차원에서 헌법에 명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나 산업·직역을 배려하고자 하는 헌법적 의지를 천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⁵⁾
 -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 제123조에 대해 “농수산업정책, 지역적 경제촉진과 중소기업정책이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지역 간의 경제적 차이를 조정하고, 국민경제적 이유에서 일정 경제부문이 변화한 시장조건에 적응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거나 또는 경쟁에서의 상이한 조건을 수정하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낙후한 지역이나 일정 경제부문을 지원할 국가의 과제를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가 보조금이나 세제상의 혜택 등을 통하여 시장의 형성과정에 지역적으로 또는 경제 부문별로 관여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국가의 지원조치에 의하여 조정된 새로운 기초 위에서

4)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9, 265면

5) 법제처, 헌법주석서Ⅳ, 2010, 522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 제123조의 목적이다.”라고 판시하여 그 해석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⁶⁾

- 헌법 제123조의 취지와 목적이 헌법재판소의 판결례처럼 각 조문구성상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해석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어업육성 및 보호의무라는 국가적 과제를 놓고 본다면 그 근거를 헌법 제123조제1항으로 보는 것이 보다 구체적이라 판단됨.
- 헌법적 차원에서 농업 및 어업을 동시에 규정하고, 관련 산업주체인 농·어민 그리고 그 경제적 산물인 농수산물을 병렬적 관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유사한 직역에 해당하는 두 산업 및 그 종사자들을 국가가 모두 보호하겠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지, 양자를 동일한 조건과 범위에 따라 동일하게 지원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농업 및 어업과 그 종사자들이 국가의 보조와 지원이 필요한 보호주체임은 맞지만 그 보호체계는 입법을 통해 구체화 되므로, 이 때 국가는 각 산업의 현황 및 조건에 맞게 지원의 요건과 범위를 달리 하여 경제적 발전이 가능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해야 한다는 의미임.

2. 헌법상 국가의 어업육성 및 보호의무의 연혁 및 법적 성격

(1) 연혁

- 1962년 제5차 헌법개정을 통해(1962. 12. 26) 어민협동조합 육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최초로 어업육성 및 보호와 관련된 규정(1962년 헌법 제115조)을 신설함.
- 1980년 제8차 개정에서는 어민의 자조기반 어촌개발계획 수립 내용이 신설되면서, 보다 확대된 내용으로 해당 규정이 개정되었음.
- 1987년 제9차 개정을 통해 수산물 수급 및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면서, 현행 헌법과 동일한 조문구성 체계가 갖추게 되었음.

6) 헌재 1996. 12. 26. 96헌가18/법제처, 앞의 글, 522면

〈표-1〉 헌법상 국가의 어업육성 및 보호의무 개정연혁

개정	조문내용	비고
제5차 헌법개정 (1962. 12. 26)	제115조 국가는 농민·어민과 중소기업자의 자조를 기반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그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	- 농어민 자조조직 육성 - 자조조직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제8차 헌법개정 (1980. 10. 27)	제124조 ① 국가는 농민·어민의 자조를 기반으로 하는 농어촌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한다. ② 국가는 중소기업의 사업활동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농민·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	- 농어촌 개발계획 수립을 통한 지역균형발전도모(신설)
제9차 헌법개정 (1987. 10. 29)	제123조 ①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 농어촌종합개발 및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 농수산물수급균형 및 유통구조개선(신설)

(2) 법적 성격

- 헌법 제123조는 현대산업사회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산업인 어업을 보호하고 그 산업주체인 어민을 보호와 육성하고 지역 간 경제적 불균형으로 야기되는 국민수혜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국가적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이것은 곧 경제민주화를 위한 불가결한 시대적 요청이므로 종래 헌법보다 상세히 규율하고 있다는 점이 동 조항의 특성으로 지적되고 있음.⁷⁾

7) 법제처, 앞의 글, 524면

- 제119조제2항에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실현방안의 하나는 현대산업사회에서 경제적 약자인 어민의 보호육성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런 점에서 헌법 제123조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의 보호와 육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체계적으로 해석될 수 있음.⁸⁾
- 헌법 제123조제5항 어민의 자조조직의 보장 규정을 제도보장으로 보아, 입법권자에 의해 그 존속 여부 자체가 제한될 수 없다고 보는 견해도 존재함.⁹⁾
- 헌법 제12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어업육성 및 보호의무가 헌법상의 입법의무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입법부작위로 인한 헌법소원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견해도 성립할 수 있으나, 동 규정을 살펴보면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과 같은 구체적인 법률제정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어촌종합개발 및 지원 등의 계획 수립, 유통구조 개선 등의 국가의 노력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헌법소원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음.
- 다만, 헌법 제123조의 어업육성 및 보호의무는 국가의 과제로서 헌법이 지향하는 목표와 가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결국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 속에서 의무달성여부는 논할 수 있음.

3. 헌법상 국가의 어업육성 및 보호의무 관련 주요내용 및 국가별 비교

(1) 주요내용

- 어업을 농업과 더불어 국가의 기반산업으로 인정하던 시대를 거친 국가에서는 영세하고 낙후된 산업의 현실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국가적 지원에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어업은 영세한 산업여건으로 인해 지속적 보호가 요청되고 있는 실정으로 인해 어업의 보호와 육성을 통해 다른 산업과 어업 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헌법적 의미를 헌법 제123조제1항에 표명하였음.

8) 법제처, 앞의 글, 524면

9) 정극원, 독일기본법과 한국헌법에서의 제도보장론,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3호, 2008, 385면

- 헌법 제123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어촌종합개발과 지원 등에 필요한 계획 수립과 시행은 그 목적상 어업보호 및 육성에 타당한 것이어야만 하며, 국가가 반드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만 하는 필수적 계획에 해당하므로 계획의 구체화를 위한 입법적 체계가 뒷받침 될 것이 전제되어 있는 조항임.
- 나아가 헌법 제123조의 체계를 볼 때, 어업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종합개발계획 및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은 제2항 및 제4항 그리고 제5항과의 체계를 고려할 때 그 내용이 지역 간 불균형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하며 어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야만 하며, 어민의 자조조직의 활동과 발전을 위한 방안도 포함되어야만 하는데, 계획의 내용 속에 앞서 언급한 각각의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지, 계획의 형식적 측면에서 모든 내용을 포괄하는 종합계획만 수립해야 한다는 뜻을 의미하지는 않음.
 - 헌법재판소는 어업에 의존하는 지역이 지역적 경제구조가 심각한 불균형을 나타내기 때문에, 헌법 제123조 제1항, 제2항, 제5항에서 경제력에 일반적으로 평균 이하인 어촌지역과 어업경제 부문에 대하여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함을 강조 하고 있다고 판결하고 있음.¹⁰⁾
- 헌법 제123조제4항 어민의 이익보호는 현행 헌법에서 신설된 규정으로써, 그 취지는 어민이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국가경제정책적 차원에서 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어민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질서의 건전화를 도모해 최종적으로 수산물 소비자인 전체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조항임.¹¹⁾
- 헌법 제123조제4항은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의 어업보호육성의 연장선상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의 이익보호를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¹²⁾

10) “국가의 지역정책은 농·어촌의 이주현상과 대도시로의 지나친 인구집중을 방지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인구분산을 이루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제성장과 안정이라는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균형 있는 경제, 사회, 문화적 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정책적 목표를 촉진토록 하는데 있다.” 판시하고 입법자가 개인의 기본권침해를 정당화하는 입법목적으로서 지역경제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지역의 현존하는 경제적 낙후성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지역간의 심한 경제적 불균형과 같은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음: 법제처, 앞의 글, 525면

11) 법제처, 앞의 글, 527면

12) 법제처, 앞의 글, 527면

- 헌법 제123조제5항에서 말하는 어민의 자조조직 육성과 자율적 활동과 발전의 보장은 어민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자조조직인 협동조합 등을 국가가 적극보호 육성해야 한다는 의지를 천명한 규정임.¹³⁾
- 과거 어민의 자조조직이 정치적 이용의 대상이 되었던 점을 상기하여 종래 헌법에서는 중소기업의 자조조직과 더불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문구를 두고 있으나, 여기서의 '자조조직'은 어업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업, 중소기업 축산업 및 기타 각종사업도 해당되며, 헌법상의 결사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등에 의해 보호되는 주체임을 밝히고 있음.¹⁴⁾
 - 헌법재판소는 "절대적 개인주의·자유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초기 자본주의의 모순 속에서 소비자·농어민·중소기업자 등 경제적 종속자 내지는 약자가 그들의 경제적 생존권을 확보하고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결성한 자조조직이 협동조합"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축산업 협동조합 제99조제2항이 기존의 조합과 구역을 같이하는 경우 신설 조합의 설립을 제한하는 것이 결사의 자유 침해라고 판시하였음.¹⁵⁾
 - 어민의 자조조직 육성은 "자조조직이 제대로 활동하고 기능하는 시기에는 그 조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후자의 소극적 의무를 다하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조직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향후의 전망도 불확실한 경우라면 단순히 그 조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적극적으로 이를 육성하여야 의무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임.¹⁶⁾
 - 국가의 자조조직 육성 의무는 보충성 원칙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해야만 하며, 해당 단체의 자율성 행사에 의한 자조조직의 육성이 우선하는 것이고, 이러한 자율성이 발휘되지 못할 경우에는 비로소 국가의 자조조직육성이 보충적으로 시행되어야만 한다는 것임.¹⁷⁾

13) 법제처, 앞의 글, 528면

14) 법제처, 앞의 글, 528면

15) 헌재 1996. 04. 25 92헌바47; 헌재 2000. 6. 1. 99헌마553

16) 법제처, 앞의 글, 529면

17) 법제처, 앞의 글, 529면

(2) 국가별 헌법규정 비교

-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우리나라에 계수된 법률이 많은 국가로서 헌법규정 비교 시에도 주로 언급되는 국가이므로 1차적으로 이들 국가의 헌법규정상 어업 관련 지원 근거를 살펴보고, 수산물 등의 수출이 국가의 주요산업인 캐나다, 노르웨이 등과 같은 국가들 역시 함께 비교하고자 함.

국가	헌법적 관련 규정	비고
독일	독일기본법 제74조(경합적 입법사항)제1항제17호 (1) 경합적 입법은 다음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17. 농업 및 임업생산의 지원(경지정리법 제외), 식량의 확보, 농업 및 임업생산물의 수출입, 원양어업, 연안어업 및 해안보호	연방과 주의 입법관할에 관한 규정
프랑스	어업보호에 관한 규정 없음	
일본	어업보호에 관한 규정 없음	
캐나다	헌법 제91조(캐나다 연방의회의 입법권한) 여왕은 캐나다 연방의회 상원과 하원의 권고와 동의에 따라 이 법에 의하여 각 주 입법부에 독점적으로 할당된 일련의 주제목록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안들과 관련하여 캐나다의 평화, 질서 및 원활한 통치를 위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보다 확실하기 위해, 그러나 이 조에서 이미 규정한 제반 조항의 보편성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캐나다 연방 의회의 독점적 입법권한을 아래에 열거한 주제에 해당되는 모든 사안에 확대적용된다. 12. 해안 및 내륙어장	캐나다연방의회의 입법 권한에 관한 규정
노르웨이	어업보호에 관한 규정 없음	

- 5개 국가들의 헌법을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헌법 제123조제1항처럼 어업육성 및 보호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입법관할권과 관련된 규정에 “연안어업 및 해안보호” 또는 “해안 및 내륙어장”이라는 표현을 통해 입법관할 영역만을 명시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독일기본법 제74조 경합적 입법사항은 원칙적으로 연방이 입법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주가 입법권을 갖는 사항을 의미하는데, 실제 입법과정에서는 연방입법으로 정한다 할지라도, 주가 그에 따른 위임사무를 집행하기 때문에, 주 법률 역시 위임의 범위 내에서 입법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음.
 - 따라서 독일기본법 제74조제1항제17조에 따라 연방이 입법을 통해 연안어업 및 해안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할지라도, 그 집행은 주에서 이뤄지게 되므로 연방은 그에 관한 최종 감독권만 행사할 뿐, 주가 실질적인 집행과 중간관리를 책임지게 되는 구조임.
 - 캐나다 헌법 제91조 역시 연방이 해안 및 내륙어장에 관한 입법권을 갖는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독일기본법과 다른 점은 입법대상만을 규정할 뿐 보호, 관리·감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포괄적 전권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헌법규정상 어업 관련 지원근거의 유무, 또는 그 구체성 여부는 각 국가별 헌법제·개정 과정 및 헌법 정치사적 다양한 요건이 바탕이 되어 형성된 것이므로, 헌법적으로 보호 및 지원근거가 있는 것이 관련 법률의 입법적 타당성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요건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 직결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임.
 - 예컨대, 노르웨이의 경우 헌법상 어업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어 등의 수산물 수출에 관해 세계적으로 우위에 있는 국가라 할 수 있음.
- 노르웨이는 수산업을 국가수출산업의 한 축으로 삼고 고부부가 고유 브랜드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수산연안부(Ministry of Fisheries and Coastal Affairs)가 수산물 교육 전반을 총괄하며, 수산물 수출 촉진은 양식·수산식품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어류제품수출법(Fish Export Act. 1990) 및 어류제출수출규칙(Fish Export Regulation, 1997)에 의거하여 ‘노르웨이 수산물위원회(Norwegian Seafood Council, 이하 NSC)가 수립되어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¹⁸⁾

18) 임경희 외 3인, 한국 수산식품 세계화 전략,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7, 150면

- 이 같은 입법체계와 행정조직을 기반으로 현재 노르웨이는 2014년 기준 세계 수산물 교역시장에 서의 주요수출국 상위 5개국 가운데 하나의 국가의 해당하며, 그 교역량은 전 세계 수출액의 37%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노르웨이 수산물 수출은 연어, 송어 등 양식 수산물의 수출이 주를 이루고 있음.¹⁹⁾

〈표-2〉 상위 20개 수산물 수출국²⁰⁾

(단위: 억 달러, %)

구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 증감률
전체	521.0	746.2	1,062.1	1,248.8	1,238.8	1,337.3	1,417.4	7.4
중국	37.8	77.2	135.0	173.6	184.6	197.2	211.7	13.1
노르웨이	35.0	49.1	87.6	93.3	87.9	102.5	106.9	8.3
베트남	14.8	27.6	50.9	61.9	62.1	68.3	79.9	12.8
태국	43.5	44.7	71.5	82.1	81.4	71.2	66.7	3.1
미국	31.2	42.9	47.6	58.9	58.6	60.5	62.7	5.1
캐나다	28.9	36.8	39.6	43.3	43.5	45.0	47.2	3.6
네덜란드	14.6	24.4	30.0	38.0	36.5	38.1	41.7	7.8
스페인	16.9	26.6	33.9	40.6	38.9	39.7	41.3	6.6
스웨덴	4.7	11.8	26.6	28.6	28.8	35.9	38.8	16.4
덴마크	20.6	29.3	31.0	34.8	32.1	36.9	37.4	4.3
독일	10.5	18.3	25.7	30.4	27.6	30.8	33.4	8.6
러시아	3.8	5.2	22.8	25.0	26.6	29.9	30.2	16.0
영국	11.5	17.8	21.6	25.1	22.0	24.3	27.5	6.5
폴란드	2.1	6.4	13.8	15.4	14.8	18.7	19.4	17.3
일본	8.2	12.9	20.1	19.4	18.9	20.5	19.3	6.3
한국	14.9	11.6	17.2	21.8	21.9	19.6	18.5	1.6

19) 임경희 외 3인, 앞의 글, 18면 및 147면

20) 임경희 외 3인, 한국 수산식품 세계화 전략,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7, 18면

구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 증감률
프랑스	11.0	16.3	16.8	18.1	18.0	19.2	18.1	3.6
멕시코	7.9	7.2	9.2	12.4	9.6	12.2	12.9	3.5
벨기에	5.1	10.0	11.8	13.5	11.1	12.5	12.5	6.6
포르투갈	2.9	4.6	9.1	11.1	10.1	10.9	11.9	10.6

자료 : UN Comtrade(2017.05.31) 원자료를 저자 가공

〈표-3〉 노르웨이 10대 주요 품목별 수출액²¹⁾

(단위: 백만 NOK)

순위	품목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년대비 증감률(%)
1	연어	29,562	39,661	43,731	47,604	61,347	28.9
2	대구	5,606	5,812	7,233	7,917	8,766	10.7
3	청어	4,182	3,158	2,725	2,348	3,133	33.4
4	고등어	3,004	2,905	4,129	3,828	4,066	6.2
5	은대구	1,791	1,682	1,861	2,022	1,803	△10.8
6	송어	1,819	2,367	2,348	2,304	3,899	69.2
7	해덕	1,452	1,289	1,488	1,251	1,446	15.6
8	갑각류 / 연체동물	263	827	1,000	1,536	1,857	20.9
9	링	240	188	234	300	310	3.3
10	기타 어류	2,898	2,271	2,323	2,890	2,596	△10.2

자료 : 노르웨이 통계청, <https://www.ssb.no/en/jord-skog-jakt-og-fiskeri/statistikker/fiskeri>(2017.10.9. 최종 접속)

- 이들 주요 국가의 헌법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헌법 제123조는 어업보호 및 자원과 관련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1) 임경희 외 3인, 한국 수산식품 세계화 전략,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7, 147면

- 헌법적 근거가 있더라도, 관련 법률의 구체화가 미비되는 경우 그 지원과 보호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 헌법규정이 형해화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어업육성 및 보호를 위해 보다 중요한 것은 법률 이하의 지원체계를 효과적으로 갖추는 것이라 생각됨.

4. 헌법상 국가의 어업육성 및 보호의무 관련 입법체계

- 현행 법률가운데 농어업과 관련된 법률은 총35개이며, 크게 산업별로 농어업 및 어업으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 <표-4>와 같음.
- 이 가운데 농업과 어업을 1개의 법률에서 동시에 관할하고 있는 법률은 20개이고, 어업(수산업 포함)만을 관할하고 있는 법률은 14개임.
- 농어업을 공동관할하고 있는 법률의 소관부처는 금융위원회가 담당하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을 제외하고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관할하고 있으며, 어업 관련 법률은 14개에 해당함.
- 2003년 3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 수산분야는 해양수산부, 식품 안전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각각 구분하는 과정에서, 농어업과 관련된 법률의 소관부처가 현행처럼 다양해지게 되었음.

<표-4> 어업육성 및 보호의무 관련 법률

	법률명	제정일	소관부처
농어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2.01.17.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9.04.01.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1.01.08.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2004.03.05.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법률명	제정일	소관부처
농어업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2015.01.06.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어업재해대책법	1967.01.16.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1999.02.05.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1976.12.31.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2010.02.04.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1999.01.21.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2012.02.22.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2001.12.31.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1971.01.13.	금융위원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04.03.22.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7.08.3.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1997.12.13.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2010.01.25.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산업진흥법」	2007.12.27.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	1967.10.31.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2006.09.27.	농림축산식품부	
어업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1.07.25.	해양수산부
	어업자원보호법	1953.12.12.	해양수산부

	법률명	제정일	소관부처
어업	내수면어업법	1975.12.31.	해양수산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2011.03.29.	해양수산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5.03.27.	해양수산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2007.12.21.	해양수산부
	수산업법	1953.09.09.	해양수산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2015.06.22.	해양수산부
	수산업협동조합법	1962.01.20.	해양수산부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003.09.03.	해양수산부
	수산자원관리법	2009.04.22.	해양수산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2015.06.22.	해양수산부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2014.10.15.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1977.12.31.	해양수산부

- <표-4>에서 언급한 법률을 헌법 제123조와의 구체적 연관성을 고려하여 구분하면, 어업육성 및 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종합개발 및 그 지원 등과 관련된 법률의 경우 관련 정책의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이나 종합계획을 수립할 근거가 되거나, 농어업인 및 농어업경영체에 관한 재정지원 및 기금마련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음.

<p>헌법 제123조 제1항 농어촌종합개발 및 그 지원 등의 계획수립 및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

<p>헌법 제123조제4항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 구조개선/농어민 이익보호</p>	<p>-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p>
<p>헌법제124조제5항 농어민 자조조직육성 및 활동 보장</p>	<p>- 수산업협동조합법 - 농업협동조합법</p>

- 어업 및 어업인의 안전을 위해 재해대책 및 농어업인 보험 관련 법률들이 제정되었고, 수산물의 품질 관리 및 수산생물질병관리에 관한 법률도 함께 제정되었음.
- 자원관리 및 보존 그리고 안전 및 자원관리와 관련해 농어업인 보험 및 수산자원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음.
- 농수산물의 가공을 통한 식품산업적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2008년 이후 관련 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법률들이 제정되기 시작하였음.
- 이 같은 법률들은 원재료에 대한 수요가 국내외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생산주체인 어민들의 수입원 증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민의 이익보호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높은 법률이라 할 것임.
- 이와 관련해 「식품산업진흥법」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데, 두 법률 모두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관할하고 있는 법률임.
- 국가의 어업육성 및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정책적 차원에서 실현한다는 것은 국가가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적 영역에 대해 지원하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취지에서 수산식품분야를 중심으로 입법체계를 분석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자 함.

<p>안전 및 자원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농어업재해대책법 - 어업자원보호법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수산자원관리법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내수면어업법 - 수산업법
<p>식품/산업육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식품산업진흥법

III. 수산식품산업 분야의 현황 및 입법체계

1. 수산식품산업 의의 및 현황

- 일반적으로 식품산업이라 함은 대상 및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농어업인이 생산하거나 수입된 농수산물에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수집, 가공, 포장, 판매되는 제반 경제행위를 수행하는 산업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음.²²⁾
- 선행연구결과에 따르면, “식품산업은 크게 식품가공(제조업), 식품유통업 및 외식업을 포괄하는 의미로 통용되는데, 수산식품산업이라 함은 어장, 식탁 어촌과 도시의 가교라 할 수 있으며, 제1차 산업인 어업, 양식업, 채취업과 이들의 활동으로 생산된 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하는 2차 산업(제조·가공업), 그리고 유통 및 외식 등의 서비스를 포함하는 복합 산업의 형태”로 보고 있음.²³⁾
- 또한 수산물은 농축산물에 비해 어획 후 사후 변화가 빨라 선도가 급격히 저하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수산식품은 원재료를 보관, 수송하는 시설이나 기자재가 농산물과 크게 달라져야만 하며, 그에 대한 비용이나 공간 등도 달라져야 한다고 보고 있음.²⁴⁾
- 따라서 이 같은 수산물의 특징에 맞추어, 수산식품산업을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수산물과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을 생산·가공·제조·조리·포장·보관·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수산식품을 구성하는 세부산업으로는 수산물가공 및 제조업, 식재료산업, 식품유통서비스업, 외식점업, 식기자재산업(포장업)등을 포함하는 산업”으로 보고 있음.²⁵⁾

22) 주문배 외 6인, 수산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실천방안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2010, 9면

23) 주문배 외, 수산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장단기 정책방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12, 1면

24) 주문배 외 6인, 수산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실천방안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2010, 14면

25) 주문배 외 6인, 수산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실천방안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2010, 14면

- 수산물에 초점을 둔 수산식품산업의 발전은 생산자인 어민뿐만 아니라, 수출까지 이뤄진다면 소비자 후생과 전체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음.²⁶⁾
-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은 원재료 뿐만 아니라, 인공을 가한 식품 등의 식량자원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사안이므로 수산식품산업의 발전은 공익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음.²⁷⁾
- 우리나라의 연간 수산물 생산은 300만 톤 이상으로 2016년 326만 톤을 기록하고 있으며, 일반 해면 어업, 원양어업으로 대별되는 어선어업의 경우 전체적으로 생산이 감소한 반면, 양식어업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²⁸⁾
 - 이는 어선어업의 경우 잡을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며, 최근 국내외적으로 자원관리에 따른 규제가 강화된데 따른 결과라고 보고 있으며, 품목별 생산 동향을 보면 양식 중심의 다시마, 김, 미역 등의 해조류와 굴, 홍합 등의 패류 생산이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다시마, 김, 홍합 등의 경우 연간 생산량이 30만 톤 이상으로 대규모 생산기반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²⁹⁾
- 수산물 원료 생산과정에서는 자원관리라는 규제요건이 강화되어 어업보다는 양식업에 기반 한 수산물 부가가치 산업 개발이 필요함. 수산식품산업이 세부업종별로 풍성한 복합산업의 형태를 띠고 있다면 그에 맞는 규제체계 및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하지만, 현재는 수산물가공업만 영업신고 조항을 두고 있을 뿐임.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등) ① 수산물가공업[수산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사료·비료·효료(糊料)·유지(油脂) 또는 가족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6) 임경희 외 3인, 한국 수산식품 세계화 전략,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6면

27) 김현용, 수산업의 중요성과 공익적 가치,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번영을 위한 헌법개정 방향 자료집, 2018.01.24, 40-44면

28) 임경희 외 3인, 앞의 글, 91면

29) 임경희 외 3인, 앞의 글, 92-93면

- 그러나 실제 수산식품산업 분야에 포함될 수 있는 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체의 영세성은 다른 식료품 제조업과 비교해서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실정임.³⁰⁾

〈표-5〉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2014년 기준)³¹⁾

(단위 : 개)

구분	전체	10~19명	20~49명	50~99명	100~199명	200~299명	300~499명
사업체(개)	895	465	312	84	28	5	1
비중(%)	100.0	52.0	34.9	9.4	3.1	0.6	0.1

주: 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임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원자료(2017.09.12) 저자 가공

〈표-6〉 식료품 제조업 부문별 평균 종사자·출하액·부가가치(2014년 기준)³²⁾

(단위 : 개)

구분	식료품 제조업 전체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곡물 가공품 제조업
종사자 수(명)	38	33	24	27
출하액(백만 원)	14,725	6,110	3,794	16,538
부가가치(백만 원)	4,867	2,131	1,300	4,592

주: 1) 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임

2) 해당 자료는 각 항목별 전체 자료에서 사업체를 나누어 산출한 자료임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원자료(2017.09.12) 저자 가공

- 수산식품산업의 경우 향후 수출을 통한 경제이익 창출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련 산업의 영세성을 보완하고, 수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총괄할 수 있는 기관의 설립 역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³³⁾
- 문재인 정부에서는 수산물해외시장개척 확대 및 수산식품 수출가공단지 조성을 주요공약사항으로 내걸고, 이와 관련해 양식업의 고도화 및 수출전략사업을 위한 다음과 같은 국정과제를 제시하였음.

30) 임경희 외 3인, 앞의 글, 99면

31) 임경희 외 3인, 앞의 글, 99면

32) 임경희 외 3인, 앞의 글, 100면

33) 임경희 외 3인, 앞의 글, 101면

* 공약사항 : 수산물해외시장개척 확대 및 수산식품 수출가공단지 조성

- ① 수출촉진 및 홍보 마케팅 지원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지원사업(수출지원센터) 확대
- ② 수산물 수출상품 개발을 위해 수산식품개발 지원 확대
- ③ 수출 증대를 위해 수산식품 수출가공단지 조성 추진

** 국정과제 84-2 : 양식업의 고도화 및 수출전략산업화

- ① 수출지원센터 확대 설치 및 운영을 통하여 해외시장 개척 지원
- ② 수출목적형 유망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전통 수산식품의 고품질화, 수산물 유래 고부가가치 건강 기능성식품 등 수산식품 핵심기술 개발
- ③ 수산물 수출가공 클러스터의 권역별 조성을 통하여 수출기반 강화
- ④ 김 산업 전 단계에 걸쳐 '김 산업 육성' 추진

2. 수산식품산업 분야 관련 법률 및 지원체계

- 수산식품산업 관련 법률은 크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 「식품산업진흥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소금산업진흥법」 등을 언급할 수 있음.
- 수산식품산업 관련 개별법이 많다는 것은 지원요건도 세분화하고 다양화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관련 규제도 늘어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숫자적 비교만으로 지원체계의 충분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임.
- 다만, 법률에서 지원체계가 합리적이라고 할 때에는, 법률이 체계정합성을 가지고, 그 근거 및 요건이 명확할 때 일 것이므로, 수산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선결되어야 하는 사항은 그 지원근거 및 요건의 명확성이 확보되어야만 함.
- 이 같은 차원에서 본다면, 앞서 언급한 법률 가운데 수산식품 및 수산식품산업에 대한 구체적 정의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원료 및 재료가 되는 농수산물이 통합하여 규정되는 체계로 식품산업, 전통식품산업을 정의하고 있음.

- 실제 수산식품산업 분야에서는 「식품산업진흥법」이 실질적인 지원근거로 원용되고 있으며, 헌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식품산업진흥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식품산업진흥법」 제4조), 그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며(동법 제7조),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 산업 관련 통계조사 및 산업발전을 위한 정보분석을 통해 사업자를 지원하고자 함(동법 제8조부터 제9조의2).
-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육성 및 지원하고(「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하여 지원체계를 갖추고자 하였으며(동법 제12조의2), 식품명인 지정 및 지원 등을 통해 식품기술의 인적 지속에도 지원하고 있으며, 식품수출 지원기관을 통해 수출증대의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였음.

<p>제1장 총칙</p>	<p>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p>
<p>제2장 식품산업의 진흥기반의 조성</p>	<p>제7조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제8조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제9조 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제9조의2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제10조 국제교류 및 무역진흥 제11조 식품산업 사업자단체 제12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육성 제12조의2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 등</p>
<p>제3장 식품산업의 진흥</p>	<p>제13조 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제13조의2 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재배 등 제14조 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제14조의2 식품명인제품의 사후관리 제15조 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제16조 삭제</p>

<p>제3장 식품산업의 진흥</p>	<p>제17조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 제17조의2 한식세계화사업추진기관의 지정 등 제17조의3 식품수출 지원기관 제18조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제19조 식품성분 조사 등 제19조의2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제19조의3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제19조의4 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제19조의5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등 제19조의6 수산물가공업의 정지 등</p>
<p>제4장 식품의 품질관리</p>	<p>제20조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제21조 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 추진 제22조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제22조의2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제23조 삭제 <2012.6.1> 제24조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4조의2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5조 부정행위의 금지 등 제26조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제27조 수수료 등 제28조 표시변경 등의 명령 제29조 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 제30조 승계</p>
<p>제5장 보칙</p>	<p>제31조 조세의 감면 제32조 인증표시가 된 식품의 우선구매 제33조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제33조의2 청문 등 제34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3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p>
<p>제6장 벌칙</p>	<p>제36조 벌칙 제37조 양벌규정 제38조 과태료</p>

IV. 수산식품산업발전을 위한 법적 쟁점 및 방향

1. 수산식품산업의 범위 관련 사항

- 「농업식품기본법」 및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르면, ‘어업활동으로 생산된 수산물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 정의할 수 있음.
- 그러나 「수산업 및 어촌 발전기본법」에는 수산식품산업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동법 제3조에서 수산업이 어업을 포함하는 산업으로 개념규정 되어 있으며, 수산물은 수산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수산물가공업 수산물을 통한 식료품제조 및 가공산업으로 규정되어 있음.
- 「농업식품기본법」 및 「식품산업진흥법」에는 수산물은 어업활동을 통한 생산물로 보는 반면, 「수산업 및 어촌 발전기본법」에서는 수산업(어업,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 수산물유통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 정의하고 있어, 수산물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임에도 포섭하는 영업의 범위가 각각 다르게 규정하여 체계적 혼돈을 야기하고 있음.
 - 물론 「농업식품기본법」 및 「식품산업진흥법」 제3조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수산식품분야의 식품산업은 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수산물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 해석되어 「농업식품기본법」 및 「수산업 및 어촌 발전기본법」 간 영업의 범위는 결과적으로 동일하게 포섭됨.
 - 그러나 수산식품산업을 「농업식품기본법」 및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정의규정에 따른 경우, 「수산업 및 어촌 발전기본법」 상 수산식품산업을 수산물가공업에 포함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수산업-수산식품산업-수산물가공업 순으로 영업체계를 해석할 것인지는 여전히 불명확 한 것으로 남아 있게 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 시행령
수산물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6. “<u>농수산물</u>”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p> <p>가. <u>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u></p> <p>나. <u>수산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u></p>	<p>제5조(농수산물의 범위) ① 법 제3조제6호가목에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u>”이란 제2조의 <u>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u>을 말한다.</p> <p>② 법 제3조제6호나목에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u>”이란 “<u>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u>”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u>어업활동</u>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p>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수산업</u>”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p> <p>가. 어업: <u>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u>,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p> <p>7. “<u>수산물</u>”이란 수산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2의3. “<u>농수산물</u>”이란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과 「<u>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u>」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p>
식품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7. “<u>식품</u>”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u>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u></p> <p>나. <u>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u></p>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수산업</u>”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p> <p>가. 어업: <u>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u>,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p> <p>나. <u>어획물운반업: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산업</u></p> <p>다. <u>수산물가공업: 수산동식물 및 소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품, 사료나 비료, 호료(糊料)·유지(油脂) 등을 포함한 다른 산업의 원료·재료나 소비재를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산업</u></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식품</u>”이란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제3조제7호의 <u>식품</u>을 말한다.</p>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 시행령
식품			<p>라. 수산물유통업: 수산물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p>	
식품산업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제6조(식품산업의 범위)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p> <p>1. 농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가공·제조·조리하는 산업</p> <p>2. 제1호의 산업으로부터 생산된 산물을 포장·보관·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p>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수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p> <p>가.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p> <p>나. 어획물운반업: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산업</p> <p>다. 수산물가공업: 수산동식물 및 소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품품, 사료나 비료, 호료(糊料)·유지(油脂) 등을 포함한 다른 산업의 원료·재료나 소비재를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산업</p> <p>라. 수산물유통업: 수산물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2. “식품산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식품산업을 말한다.</p> <p>제19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등) ① 수산물가공업[수산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사료·비료·호료(糊料)·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 시행령
식품산업				<p>제25조의6(수산물가공업의 신고업종) ① 법 제19조의 5제1항 및 제1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유(간유) 가공업: 육상에서 수산동물(魚類)을 원료로 하여 어유(간유)를 가공하는 사업 2. 냉동·냉장업: 육상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 다만, 연육(練肉)으로 처리하여 냉동하는 경우 또는 냉장능력이 5톤 미만인 냉장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선상수산물가공업: 「수산업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어유(간유)를 가공하는 사업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품을 가공하거나 냉장하는 사업 4. 수산피혁가공업: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가죽을 가공하는 사업 5. 해조류가공업: 수산식물을 원료로 하여 비료비료용·호료(糊料)용·사료용으로 가공하는 사업용·호료(糊料)용·사료용으로 가공하는 사업

- 수산식품산업의 지원근거를 위한 개념적 명확성 확보 차원에서, 원료 및 재료인 수산물을 중심으로 본다면 관련 기본법인 「수산업 및 어촌 발전기본법」상 수산식품 및 수산식품산업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함.

2. 수산식품산업 관련 국가계획의 수립 관련 사항

(1)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 현재 「식품산업진흥법」 제4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업무는 ①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② 식품산업통계의 조사, ③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③ 식품산업 사업자단체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종합적이고 총괄적 기능의 필요성 차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일괄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입법자의 의도는 충분히 공감함.
- 「식품산업진흥법」 제1조에서 말하는 농어업 간 연계강화는 식품산업과 농업 및 어업 간 연계 강화를 의미하므로, 기본계획 역시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의 주무부처들이 전문성을 기반으로 그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합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뒷받침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기본계획의 총괄적 기능이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합리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인지는 의문임.
- 또한 「식품산업진흥법」 제2장 이하의 체계를 보면 실질적인 산업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체계 간 정합성 차원에서도 양 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그 달성도를 높이는 방안이라 판단됨.

식품산업진흥법 제2장

제4조(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의 진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식품산업과 농어업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3. 외식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3의2. 전통식품의 개발·보급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
4. 식품의 품질향상·수급·인증제도 등에 관한 사항
5. 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6. 식품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통계·정보화에 관한 사항
7. 우수 식재료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8. 식품의 품질 등에 관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보호에 관한 사항
- 8의2.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식품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단체를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제8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식품산업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2. 식품산업의 진흥·육성 등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3. 전통식품 세계화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4. 개발된 기술의 권리화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5.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식품산업진흥법 제2장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식품산업기술 등을 연구·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9조(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식품산업의 진흥과 식품의 원활한 공급 및 식품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통계법」을 준용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제11조의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제9조의2(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p> <p>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식품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식품산업 정보·통계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제11조(식품산업 사업자단체) ① 식품사업자는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p>

3.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 선행연구결과에 따르면, 수산식품산업과 관련해 수산물의 경우 선도가 쉽게 변화되기 때문에, 원료 및 재료보관 및 수송하는 시설의 입지조건 및 시설규모나 설비크기가 농산물과 다른 특성을 갖는다고 보고 있음.³⁴⁾
- 이 같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육성에 관한 총칙으로써 일반적 요건을 동일할 지라도, 시설 및 설비기준 등의 세부적 구성요건은 수산식품산업을 별도로 구분하여 체계화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음.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부서이지만, 동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수립 시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하고, 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양수산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고려하도록 되어 있음.

34) 주문배 외 6인, 수산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실천방안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2010, 14면

제12조(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육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추진을 위한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상호 연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국내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7. 국내외 다른 지역 및 다른 산업집적들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8.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국내외 투자유치와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9.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투자와 자원조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을 위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전문산업단지가 입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에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참여하는 기업과 기관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⑦ 제2항제2호의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 양 부처가 협의를 통해 구성할 수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설비기준 등의 세부적 구성요건 역시 산업별로 각각 달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 현재 「식품산업진흥법」에서는 제9조제4항(식품산업 통계조사), 제11조(식품산업 사업자단체), 제14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제22조의2(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제22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제24조(우수식품인증기관)에 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입법체계를 취하고 있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세부기준 역시 각 부처별 부령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산업별 맞춤형 육성 지원이라는 차원에 보다 부합하는 입법체계라 판단됨.

「식품산업진흥법」		
농림축산식품부령 / 해양수산부령(공동)	해양수산부령	농림축산식품부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9조 식품산업 통계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 식품산업 및 관련 산업의 진흥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14조 식품명인표시 - 제22조 전통식품의 품질인증기준 - 제22조의2 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의 원산지인증기준 - 제24조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 제29조 표시변경 등의 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9조의4 수산가공품 생산공장 설치요건 - 제19조의5 수산물가공업의 시설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2조의2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사업관련 부설기관의 설치 - 제17조의2 한식세계화추진기관의 지정 등 - 제19조의3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V. 결론

- 우리나라 헌법 제123조제1항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어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국가의 과제로서 어업육성 및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노르웨이 및 캐나다 등의 수산물 및 수산식품 수출이 주요산업에 해당하는 국가들과의 헌법과 비교해 보았을 때도, 우리나라 헌법 제123조의 구성은 농어촌종합개발과 지원 등의 계획수립에서부터 농수산물의 수급균형 및 유통구조 개선과 가격 안정, 그리고 농어민의 자조조직 보장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사회적 가치는 헌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와 다르지 않으며, 사회 속에서 헌법규범의 구체화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국가의 어업육성 및 보호의무의 실현은 입법형성을 통해 구현된다 할 것임.
- 수산식품산업분야를 규율하는 별도의 개별법은 제정되어 있지 않지만, 「식품산업진흥법」을 통해 합리적 지원의 근거 및 절차는 마련되어 있음.
- 다만, 수산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그 적용범위가 법률상 보다 분명히 구분되어야만 할 필요성이 있음.
- 현행 식품 및 수산분야 입법체계에서는 수산식품산업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산식품산업에 대한 법적 보호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법적 개념요건이 선결적으로 명확히 설정되어야만 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식품산업진흥법」 제4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경우, 실질적인 산업진흥의 기반조성 사항 동법 제2장 이하에서 농림축산식품부(농업식품) 및 해양수산부(수산식품)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 및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체계 간 정합성 차원에

서도 양 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입법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임.

- 「식품산업진흥법」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의 경우, 수산식품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요건과 관련해 해양수산부령으로 구체화 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참고문헌

김현용, 수산업의 중요성과 공익적 가치,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반영을 위한 헌법개정 방향 자료집, 2018.01.24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9

법제처, 헌법주석서Ⅳ, 2010

이개호 의원실, 해양수산 분야 헌법개정 토론회, 2017.11.14

임경희 외 3인, 한국 수산식품 세계화 전략,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7

장흥석 외 3인,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3

정극원, 독일기본법과 한국헌법에서의 제도보장론,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3호, 2008

주문배 외 6인, 수산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실천방안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2010

주문배 외, 수산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장단기 정책방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헌정제도연구사업 Issue Paper 2018-03-04

**헌법상 국가의 어업육성 및 보호의무
실현을 위한 법적 쟁점과 전망
- 수산식품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

발행일 2018년 11월 16일

발행인 이익현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T. 044)861-0300

등록번호 1981. 8. 11. 제2014-000009호

<http://www.klri.re.kr>

1. 본원의 승인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2. 이 책자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Ⅲ. 사회적 가치 강화를 위한 법적 쟁점과 전망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Tel. 044-861-0300 www.klri.re.kr